

■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」 [별지 제6호서식]

위치기반서비스사업 [] ① 신고서 [] ②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상호(또는 명칭)		
	성명(대표자)		
	주소(주된 사무소)	대표 전화번호	
		담당자	전화번호 E-Mail
홈페이지주소			

①신고서	사업의 종류	
	위치기반서비스 사업용 주요 설비	

②변경시	주요 변경사항	기 존 변 경
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, 같은 법 제9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①신고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. 2.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) 1부. 3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. 4.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 5.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(외국회사에 한함) 1부. 6.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) 1부.
	②변경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(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) 1부. 2.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①신고시	법인등기사항증명서 [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(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)]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	②변경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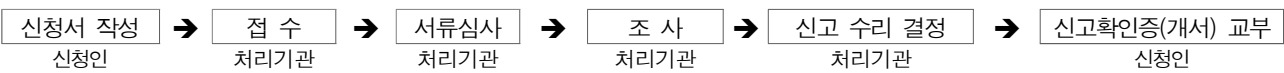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